

장애여성 단독조항 신설을 위한 반론제기

1. 어떤 법률이 진정한 일반적 효력을 지닌 법률인가

일반적이고 포괄적이며 형식적 법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별 불평등을 예방하지 않고 만든 법이 일반적 효력의 법률이라 할 수 있는가. 장애인의 절반에 대해서 조약 내의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으로 동등해질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제정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법률의 형식으로서 일반적 효력을 지닌 법률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첫째, 장애여성이 조약내의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으로 동등해지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적 목표이다. 이를 위하여 장애남성과 달리 장애여성의 경험에 기반한 장애여성만의 요구를 가장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둘째, 여성만의 공통된 경험에 기반하여서 장애여성의 보성권 보장과 관련된 내용이 본 조약내에서는 없다. 이것을 조약내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첫째 목적과 함께 그 권리보장의 대상이 “장애여성”임을 각 국가가 알게 하도록 하는 것이다.

2. main streaming은 장애여성을 동등하게 보장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1) 각 article속에 “장애여성과 장애남성의 평등”을 넣는 것은 선언적이고 성중립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1) 동일한 의미의 반복일 뿐이다.

폭력, 기초조사, 가족을 구성할 권리 등의 몇 개의 특별한 언급이 필요한 Article외에 다른 Article 속에 “장애여성과 장애남성의 평등”을 넣는 것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의 형식을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전문이나 일반원리에 동일한 말을 넣어서 정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된다. 이렇게 되면 일반원칙 속에서도 장애여성이 동등한 기회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한 조항이 필요하다고 다시 요구하게 된 치음과 같은 상황이 된다.

(2) 각 Article 속에서 남녀평등 언급도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지 못할 것이다..

특별한 언급이 필요한 해당 Article외에 다른 일반 Article 속에 “장애여성과 장애남성의 평등”을 넣는 것은 각 조항 속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핵심적인 내용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각 조항의 제목 아래에서 규정된 가장 직접적인 조치들이 우선 인식될 것이다. 그리고 남녀 평등은 현대에 와서 너무나 일반적 이념이기 때문에 전문이나 일반원리에 선언되기 때문에 우려가 발생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3. 15(bis) 장애여성 단독조항은 장애여성의 인권을 실제로 보장하는 최선의 방식이다.

1) 장애여성을 명확하고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이다.

법률에 대해 Gender- perspective에서는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지거나 숨겨져 왔던 부분을 명확하게 드러내고자 한다. 이러한 시각은 법률은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태도 때문에 불평등해진 집단이 있기 때문에 제기된다. 15(bis) 장애여성 특별조항은 조약을 요약할 때에 장애여성을 명확하게 드러나게 할 것이다. 또한 15(bis)의 내용 안에 국제장애인권리조약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일반조항들에서 장애여성이 동등하고 장애여성에게만 권리가 보장될 필요한 부분을 집약적으로 드러내줄 것이다.

2) 실제로 각 국가의 집행력을 이끌어내는데 효과적이다.

한 국가 내에서 인권보장은 구체적으로 입법, 사법, 행정의 움직이는 과정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조약 내에서 장애여성 단독조항을 명확하게 하고 장애여성에게 포함시킬 내용을 집약적으로 묶어두는 것은, 이러한 입법, 사법, 행정 과정에서 장애여성에게 대한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식이 될 것이다.

3) 15(bis)의 일부조항은 다른 관련조항들에 포함시킬 내용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1) 15(bis)의 법률, 정책에 관한 언급은 동등한 기회를 제공할 것을 명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애여성이 동등해지기 위해서 취해야 할 방식을 제시하는 것이다.

(2) 15(bis) 중에서 장애여성에 대한 폭력의 방지, 임신 출산 양육 과정에 있는 장애여성이 장애남성이나 비장애여성과 동등한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한 적절한 조치, 모성권에 대해서는 일반조항에서 언급하기 보다는 장애여성 인지적 관점으로 15(bis)에서 강조해서 보장되어야 할 부분이다.

(3) 일반조항들에서 장애여성과 장애남성의 평등하다는 언급이 위에서 우려한 선언적 의미만 갖는다면, 폭력 등의 일부 관련조항에서만 장애여성에 관한 권리가 적용될 우려가 있다. 이것은 오히려 15(bis)에서 장애여성의 권리를 집약적이고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보다 장애여성의 권리를 제한하게 될 것이다.